

**(주)스타트업의**  
**클라우드펀딩을 위한 계약서 패키지**

To :투자자님

**SAMPLE**

**오픈트레이드 (www.opentrade.co.kr)**

# 투자계약서

아래의 당사자들은 20XX년 XX월 XX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(이하 "본 계약(서)")를 체결한다.

1. 투자자:           이름:(주민등록번호)  
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소:
2. 회사:             주식회사 스타트업(이하 "회사")  
주소  
대표이사 창업자

다    음

##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

-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건 주식을 발행하고,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.
  -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XXX주
  - 1주의 금액(액면가): 금 XXX원
  -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(인수가액): 금 XX,XXX원
  -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: 금 XXX,XXX원
  -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: 20XX년 XX월 XX일
  - 투자자에게 배정할 본건 주식의 총수

투자자명	배정할 주식의 총수	납입할 총액
투자자	XXX주	XX,XXX원
합계	XXX주	XX,XXX원

-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(이하 "우선주")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으며,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.
- "우선주"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, 위 기간이 경과하면 "우선주"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.
-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, 투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주권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회사는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- 1)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, 만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주주권증서
- 2)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
- 3)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인수를 적법,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

##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

본 계약은 주권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.

1.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 하였을 것
2. 회사가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
3.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법령의 절차(상법 제418조 등)를 준수하였을 것. 단,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418조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4.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
5.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재무상황의 부정적 변동 또는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

## 제3조 진술과 보장

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.

1. 회사는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,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, 지급불능, 지급유예,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(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).
2.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,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
3.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,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,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.

## 제4조 배당에 관한 사항

“우선주”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최저배당율: 액면가액 기준 연 1.0%
2. 보통주의 배당률이 “우선주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: 참가
3. 실제 배당이 최저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: 후년도 이익배당에 대한여 누적적으로 배당 받음
4. “우선주”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: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적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

### 제5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

투자자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유중인 "우선주"의 발행가액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.

### 제6조 전환에 관한 사항

1. 투자자는 제1조 3항의 '존속기간'내에 언제든지 "우선주"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2. 전환비율은 "우선주"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.
3.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7조 상환에 관한 사항

1. 투자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"우선주"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2. 상환청구기간: 투자자는 발행일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"우선주"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3. 상환방법: 투자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.
4. 상환가액: 상환을 청구한 "우선주"의 발행가액(무상증자, 주식분할,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 계약에 의거 "투자기업"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한다)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(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)까지 연 복리 8.0%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.

### 제8조 신주인수권

"우선주"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"우선주"로,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.

### 제9조 거래완결 전 의무

회사는 본건 "우선주"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(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, 주주총회결의, 이사회결의 등 포함)를 이행한다.

### 제10조 거래완결 전 해제

1.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. 단, 거래완결 후에는 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.
2.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
3.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(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) 상대방의 통보

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

### 제11조 거래의 완결

1. 투자자는 20XX년 XX월 XX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예금계좌에 납입한다. 인수대금 전액이 위 예금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, 이 날을 본 계약에서 '거래완결일'이라 한다.
2.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,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조건으로, "본 계약" 전부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다.
3. 거래완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사는 필요한 증자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, 법인 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기타 본 계약서상의 본건 주식의 발행과 인수를 적법,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.

###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

투자자는 본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(이하 "회사주식 등")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.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계약의 종료

1. 본 계약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료한다.
2.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/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## 제14조 계약의 내용 변경

1.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2.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,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
### 제15조 통지

1. 본 계약에 따른 회사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, 팩스,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.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,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.

회사에 대한 통지

주소:

전화번호:

팩스번호:

이메일:

2.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, 팩스,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.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,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.

투자자에 대한 통지

주소:

전화번호:

팩스번호:

이메일:

####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

1.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.
2.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.

#### 제17조 세금

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.

#### 제18조 기타

1. 회사는 회사의 영업 등 사업 진행현황을 최소 주 2회 이상 오픈트레이드(www.opentrade.co.kr) 타임라인에 공시하여야 한다.
2. 회사는 지분 매각 등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오픈트레이드(www.opentrade.co.kr)에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. 또한, 회사의 경영진은 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양도, 이전, 매각하고자 할 경우,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 또는 양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(Tag-along)
3. 회사는 후속 투자유치시 본 계약상 투자자가 인수한 회사 주식을 후속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4.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,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,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.
5. 본 계약은 투자자, 회사,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6.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,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,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.

계약체결일 : 20XX년 XX월 XX일

투자자 : 투자자 (서명: \_\_\_\_\_ )

주소:

회사 : 주식회사 스타트업

주소


대표이사 창업자 (인)


SAMPLE

첨부 #1-스타트업 통장 사본

저희 **우리은행**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.

인 지 세  
100월  
납대문세무서장  
선납승인 2012년 177호



서명  


인감사용

신고객번호

계좌관리점: 삼성역지점	개설일자: 2012-12-20	전화: 02- 528-5900	
통장발행점: 삼성역지점	발행일자: 2012-12-20	전화: 02- 528-5900	

(이 통장은 표지를 참하여 12월입니다) 중요증서 11037

---

직급카드	BCFIS	발행일	FD220	자동이체	연금계좌	통장일련번호 001
N	Y	N	Y	0	0	

**약관적용 안내**

- ▶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, 신탁거래의 기본 약...  
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, 우리 은행에 부여된 약관...  
약관 또는 고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이용 안내**

- ▶ 가계우대직급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에 혜택을 받거나  
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실장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수  
만큼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▶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 
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.
- ▶ 통장, 인감, 현금지급 (CD) 카드, 신용카드 등을 분실시는 바로  
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
- ▶ 신고된 사항만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 
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  
※ 통장, 현금카드, IC카드 분실신고 : 1599-5000 / 1588-5000  
신용(BC), 체크카드 분실신고 : 1588-9955

텔레뱅킹/고객상담 : ☎ 1599-5000, 1588-5000 [해외에서 이용시 82-2-2006-5000]  
「고객의 소리」접수 : ☎ 080-365-5000(핸드폰이용시 ☎ 02-2008-5000)



## 주권미발행확인서

아래와 같은 귀하 소유 주식에 대하여 당사가 주권을 미발행 하였음을 확인하고, 주권 발행시 즉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.

1. 발행회사 :        주식회사 스타트업
2. 주식의 종류 :    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
3. 1주당 액면금액 : 금XXX원
4. 주식의 수량 :    XXX주
5. 액면 총 금액 :   XX,XXX원
6. 주주명:



20XX년 XX월 XX일
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번지 스타트업빌딩 1층

주식회사 스타트업

대표이사 XXX

(대표이사 날인)

(법인인감 날인)

인감대조 확인

첨부 : 법인인감증명서 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